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 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7)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50% 산입

(2) 호봉승급: 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나)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경기도 교육규칙 제583호 2009.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2호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과 연수휴직의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휴직”이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휴직함을 말한다.
2. “연수기관”이란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격대학원은 제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중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2.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한국학중앙연구원
4. 한국과학기술원

제5조(연수휴직의 범위) 임용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아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연수휴직 허가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